

의안번호	제509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 322 회)

##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3년 6월 21일

#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 
번호

제 509 호

제출연월일 : 2012. 6. 21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」 제4조에 의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도비(300백만원)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반영하고, 이 금액과 기존에 별도 예치된 금액을 합한 337백만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·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2년도말 조성액	2013년도 운용계획			2013년도말 조성액
		수 입	지 출	증 감	
변 경	432,904	314,785	-	314,785	747,689
당 초	432,860	14,785	-	14,785	447,645
증△감	44	300,000	-	300,000	300,044

## 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※ 첨부 :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별첨)